

외국환거래 제도 설명

2015. 8.

관세청 외환조사과

목 차

1. 외국환거래제도의 개요
2. 지급과 수령 방법
3. 기타 외국환거래 절차
4. 외국환거래법상 처분제도



외국환거래제도의 개요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2.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특징
3. 기관별 외국환관리 역할
4. 외국환거래법 체계
5.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1.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거래법 제 1조(목적)>

이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외환제도필요성) 외환시장이 투기적, 불법·편법적 거래에 놓여 충격을 받거나, 시장왜곡 현상으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기에 정부가 필요할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개입하여 일정한 제한

◆ 수단적 목적

○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보장 / 시장기능의 활성화

◆ 기능적 목적

○ 대외거래의 원활화 / 국제수지의 균형 / 통화가치의 안정

◆ 궁극적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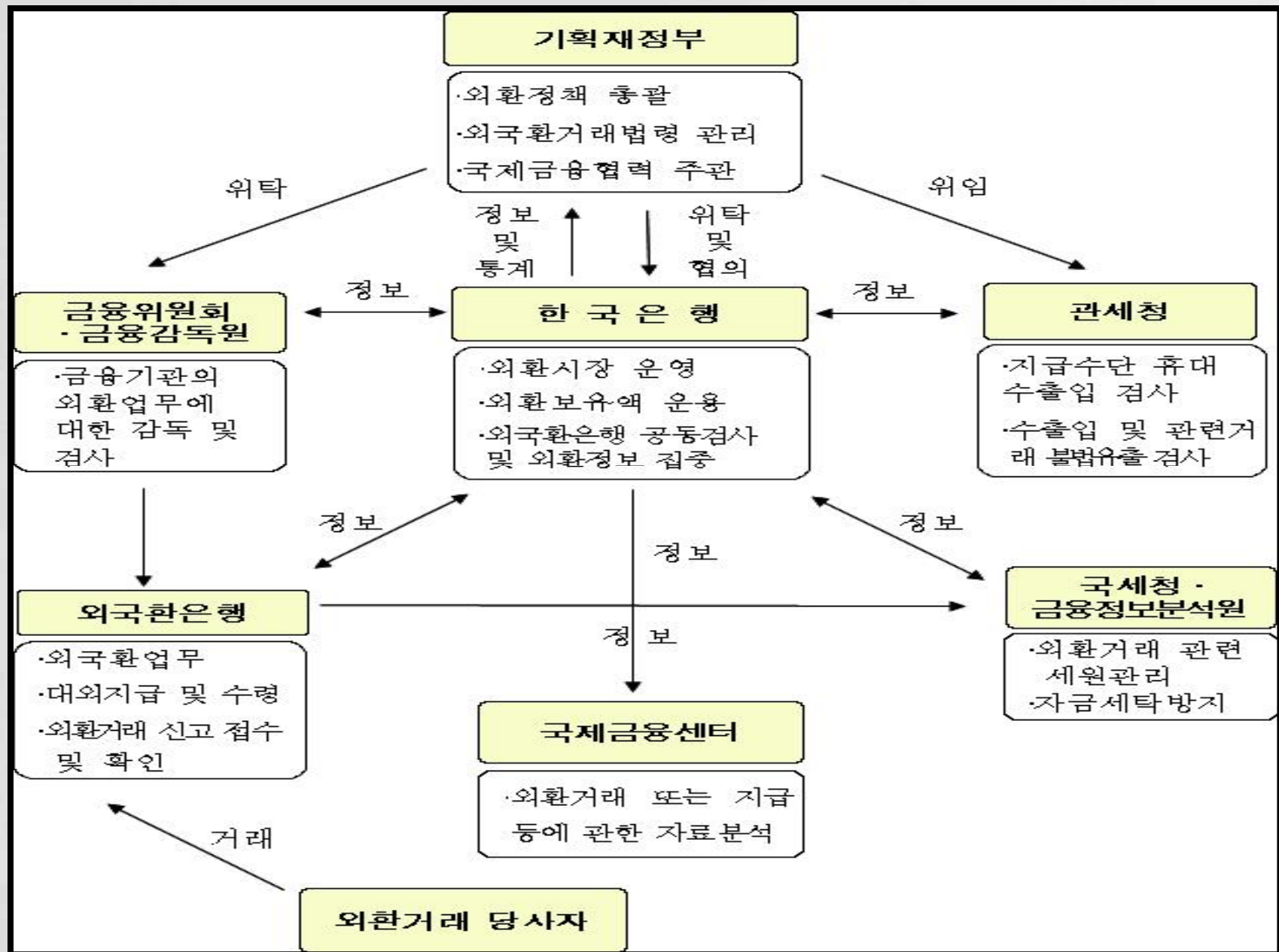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2.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특징

- ◆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
 - 지급 · 수령 · 거래의 정지(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 급격한 변동)
 - 지급수단 · 귀금속의 예치 · 매각 의무 부과(上同)
 - 자본거래 허가제 및 취득 지급수단의 예치 의무 부과
 - 국제수지,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 등
-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 확인 · 신고업무 등 위탁
- ◆ **위임입법 형식** -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외국환거래법 - 시행령 - 외국환거래규정 /통칙 등
- ◆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및 사후관리 강화**
 - 유사시 테러자금 등을 제외하고 허가제 폐지
 - 외환거래의 적정여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3. 기관별 외국환관리 역할

- ◆ **기획재정부**(외환정책 총괄, 법령 관리)
- ◆ **한국은행**(외환시장 운용, 정보 집중, **환전영업자등 검사**)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금융기관 감독, **검사**)
- ◆ **외국환은행**(외국환업무, 지급 및 수령)
- ◆ **관세청**(지급수단 휴대수출입, **수출입거래등 검사**)
- ◆ **국세청**(세원관리, 역외탈세)
- ◆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4. 외국환거래법 체계

제1장 총칙(제1조~제7조)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환율,
채권회수명령 등

제3장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제14조)

거래당사자
(개인, 업체 등)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
기관등(제8조~제12조)

해외거래자
(개인, 업체 등)

제4장 지급과 거래(제15조~제18조)

지급 절차 및 허가, 지급방법, 외화
등의 수출입, 자본거래신고 등 규정

제5장 보칙(제19조~제26조)

검사, 통보, 비밀보장, 위임 등

제6장 벌칙(제27조~제32조)

벌칙, 몰수, 양벌, 과태료 등

5.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 인적대상 :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원칙		대한민국 내 개인, 법인	거주자 이외의 개인, 법인
개인	경제활동	국내	해외
	거주기간	국민 : 3개월 외국인 : 6개월	국민 : 2년이상 체재 외국인 : 3개월 체재
법인	주소지	국내	해외
예외조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소속 국민	주한 외국공관 소속 외국인 주한미군, 국제기구

- 국적과는 관계없이 거주지역, 경제적 밀착성 등에 따라 결정
- 부양가족의 거주성 : 생계제공자의 구분을 따라감

◆ **대상행위** : 거주자간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 비거주자간 거래

- 대한민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수령
-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거래
- 거주자가 외국에서 국내의 재산·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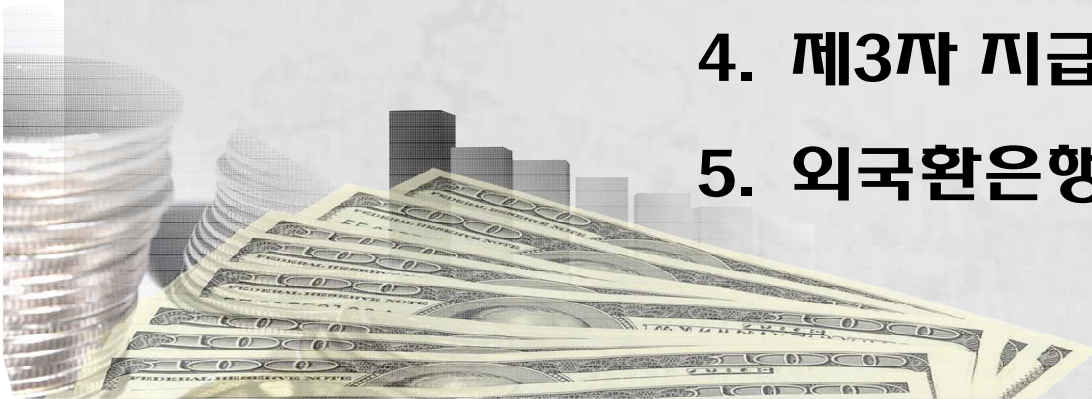
◆ **물적대상** : 외국환거래법 적용 객체

-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
- 귀금속 :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않는 금화, 기타제품
-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 이외의 지급수단

- * 대외지급수단 : ①외국통화, ②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③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가능한 지급수단

지급과 수령 방법

1. 지급과 수령 방법 신고 개요
2. 상계 등
3. 기간초과 결제
4. 제3자 지급등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1. 지급과 수령 방법 신고 개요

◆ 외국환거래에 따른 결제(지급,수령) 원칙

원 칙	한국은행총재등 신고(사전신고)
○ 거래 전후 일정한 <u>기간</u> 내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
○ 당해 거래 <u>당사자</u> 간에	○ 제3자 지급등
○ <u>외국환은행</u> 을 통하여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
○ 실제로 결제(<u>거래건별</u>)	○ 상계에 의한 지급 등

2. 상계 등(1)

- ◆ 거래의 결제에 있어 상호간 채권·채무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
- ◆ 상계 : 일회적(양자간 일반상계, 다자간 상계, 일괄상계 등)
 - 개념 :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쌍방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
 - 이유 : 외국환거래의 규모, 잔액등 외국환거래내역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워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자본유출가능성 존재
 - 신고기관 : 외국환은행의 장(원칙)
 -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상계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2. 상계 등(1)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규정 5-4조)

- 미화 **2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
 - 상호계산계정을 통한 결제(지정거래은행에 계정개설 신고)
 - 위탁수탁가공무역, 연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대금의 상계
 -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과의 상계 등
 - 신용카드업자, 보험업자 등이 외국 신용카드, 보험업자와 상계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선박)회사가 외국항로의 항공임(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는 경우
 -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 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 채무상계
 - 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 국내외철도승차권등의 판매대금과 당해거래수반되는 수수료상계
 - 국내통신사업자가 외국통신사업자와 통신망사용대가 상계할경우
- ※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의무**

2. 상계 등(2) : 상호계산

- ◆ 상인간 상시거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 지급을 약정(상법72조)
 - ◆ 상호계산 :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
 - 개념 : 외국환거래가 동일한 거래처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의 채권, 채무 총액에 대해 차액만을 결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상호계산 신고서)
 - 대차기 항목 등 사후관리는 거래규정 5-5조부터 5-7조
 - 상호계산의 기장은 수출입,용역제공의 완료후 30일 이내
 - 결산은 회계기간의 범위내에 월단위로 주기를 정하여 실시
 - 결산기간 종료 후 3월 이내 대차기잔액 신고후 지급(수령)
- ※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의무

3.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초과 지급등

◆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은 미신고(원칙)

◆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및 대응수출입 이행의무(규정 5-8~9조)

※ 사후신고 : 불가피한 사유 인정시 1년을 초과한 날부터 3월 이내

구분	기준금액	한국은행 신고대상	대응수출입 이행의무
수출	계약 건당 미화 5만불	· 본,지사 간 D/A 3년 초과 수령 · 본,지사 간 선적전 수출선수금 수령 · 수출선수금 수령 1년 후 물품 수출	수출선수금 반환 / 대응수출이행
수입	계약 건당 미화 5만불	금 수입 후 미가공 재수출로 수입시 30일 이후 결제조건	
	계약 건당 미화 2만불	사전송금 1년 이후 물품 수입	수입대금 반환 / 대응수입 이행

4. 제3자에 의한 지급 등의 방법

- ◆ 원칙적 한국은행증서, **미화 1만불 이내 외국환은행장 신고**

- ※ 불법적인 자본유출 수단으로 악용

-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다음예외가 아닌 이상 신고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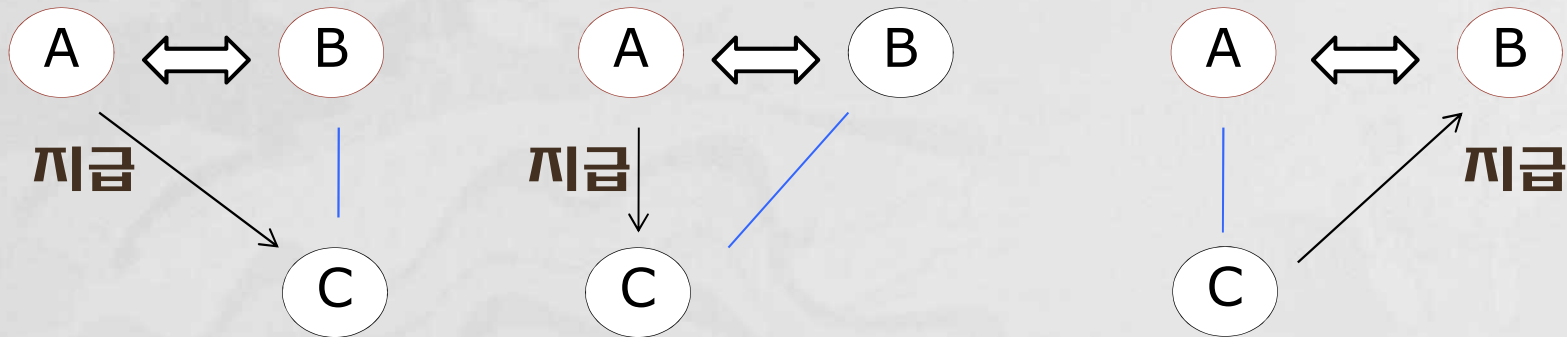
- 미화 2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하는 경우
-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
-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납세 의무자)가 수입대금을 수출자(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인터넷 물품구매시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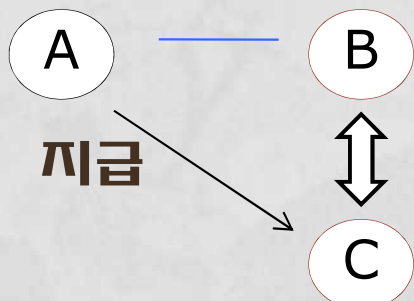
- 거래 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수령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 인수 발생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거주자가 당해 국가의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에 지급
- 인정된 거래로 외화증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예탁결제원에 지급
-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에게 지급
- 거주자인 정유회사, 가스등 수입업자가 외국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에게 원유 등을 수입함에 있어 수출국 중앙은행에 지급
- 해외광고 및 선박관리 대리대행하는 자가 지급 또는 수령

[참고] 신고대상인 제3자 지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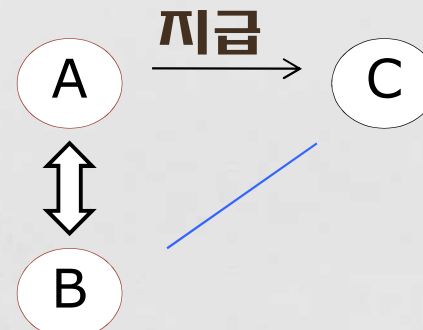
○ 거주자(A)와 비거주자 (B)간 거래에서



○ 비거주자 상호간(B, C) 거래



○ 거주자 상호간(A, B) 거래



※ 2015. 1. 1. 이전 거주자로부터의 수령시 신고 대상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의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수령(원칙)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제5-11조)

- 거주자가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여행자가 해외여행경비 등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1만불 초과 해외여행경비는 출국시 세관 신고 필요
 - 1만불 초과 유학경비, 해외체재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확인 필요
- 제4-2조의 절차를 거친 후 당해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해외에서 여행경비등을 지급하거나, 인정된 거래 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

◆ 상기 이외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기타 외국환거래 절차

1.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2. 채권의 회수명령

3. 자본거래



1.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지급수단등 : 지급수단, 증권

◆ 신고예외(제6-2조)

○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 수입

*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 제외

○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 수입

○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 수출(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 표시자기앞수표, 원화표시여행자수표)

○ 제5-11조에 의한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국내재산반출을 위하여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을 받아 휴대수출하는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신고예외 거래

- 비거주자, 외국인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 수출
(대외지급수단 국내취득사실의 외국환은행장 확인)
 - 외국으로부터 수령, 휴대수입한 범위이내
(비거주자는 최근 입국일 이후)
 - 외국인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해 취득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수출 및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 표시여행자수표 수출

- 거주자가 수출대금 수령을 위해 외화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

◆ **세관장 신고**(제6-2조)

- 미화 1만불 초과 지급수단 * 의 휴대수입
- 국민인 거주자의 미화 1만불 초과 지급수단 * 의 휴대수출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 표시자기앞수표,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제6-1호 서식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 **세관장 신고**(제6-3조)

- 신고예외 및 제6-2조 신고 이외의 지급수단등 수출입
- 사유서·원인거래 입증서류 등 제출

제6-2호 서식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

◆ **세관장의 수출입 제한 조치 등**(제6-4조)

- 입출국자의 지급수단등 수출입신고 여부 확인
- 수출입 신고하게 하거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제한 등 조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입국시)

- ◆ 모든 여행자는 다음의 등 경우에 세관에 현금등 반입 신고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휴대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1호)
 -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 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 내국통화, 외국통화, 지급수단, 대외지급수단, 내국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외화증권, 파생상품, 외화파생상품, 채권, 외화채권, 외국환(1호~13호)
 - 증권을 휴대수입하는 경우(동규정 제6-3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출국시)

구분	용도	금액 (미국 달러 기준)	신고 기관	법적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국민인 거주자	일반 해외여행경비	1만불 초과	세관	제6-2조 제2항 제2호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에서의 고용·근무·사업영위 에 따라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금액 무관	외국환은행	제4-4조 제1항 제3호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 해외이주자, 여행업자, 재외동포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1만불 초과	외국환은행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거주자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해외여행경비를 초과 하여 반출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금액보다 1만불 초과	세관	제5-11조 제1항 제2호 라목
거주자	채권·채무의 결제	1만불 초과	한국은행	제5-11조 제3항
모든 여행자	증권	금액 무관	세관	제6-3조

2. 채권의 회수명령

◆ 원칙

-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
-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 2014. 12. 31. 이전 1년 6개월 경과시 제29조제1항제1호 해당

◆ 회수대상 채권에서 제외(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한은총재에게 신고)

-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장이 인정하는 경우

◆ 회수기한 연장(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한은총재에게 신고)

- 외국환은행장의 인정 - 사유가 있어 최초만기일부터 3년이내 연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 -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시

3. 자본거래

◆ 자본거래의 유형

- ① 예금 및 신탁계약 ② 금전의 대차 및 채무의 보증 계약
- ③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
- ④ 증권의 발행 ⑤ 증권의 취득 ⑥ 파생상품거래
- ⑦ 현지금융 ⑧ 해외직접투자,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외국기업 등 국내지사, 국내외 부동산취득 ⑨ 기타 자본거래

외국환거래법상 처분제도

1. 행정처분
2. 과태료
3. 벌칙



1. 행정처분 (법 제19조)

- ✓ **적용대상** : 일반거래당사자 등
(지급절차 위반, 지급방법신고 위반, 자본거래신고 위반 등)
 - ✓ **처분내용** : 경고 또는 거래정지 제한 등
 - ✓ **경고**
 -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 경과 후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금액이 1만불(자본거래신고는 2만불)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
 - ✓ **거래정지·제한**
 - 최근 2년 이내에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년 이내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제한
- * 행정처분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 벌칙(1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29조**)

2. 과태료 (법 제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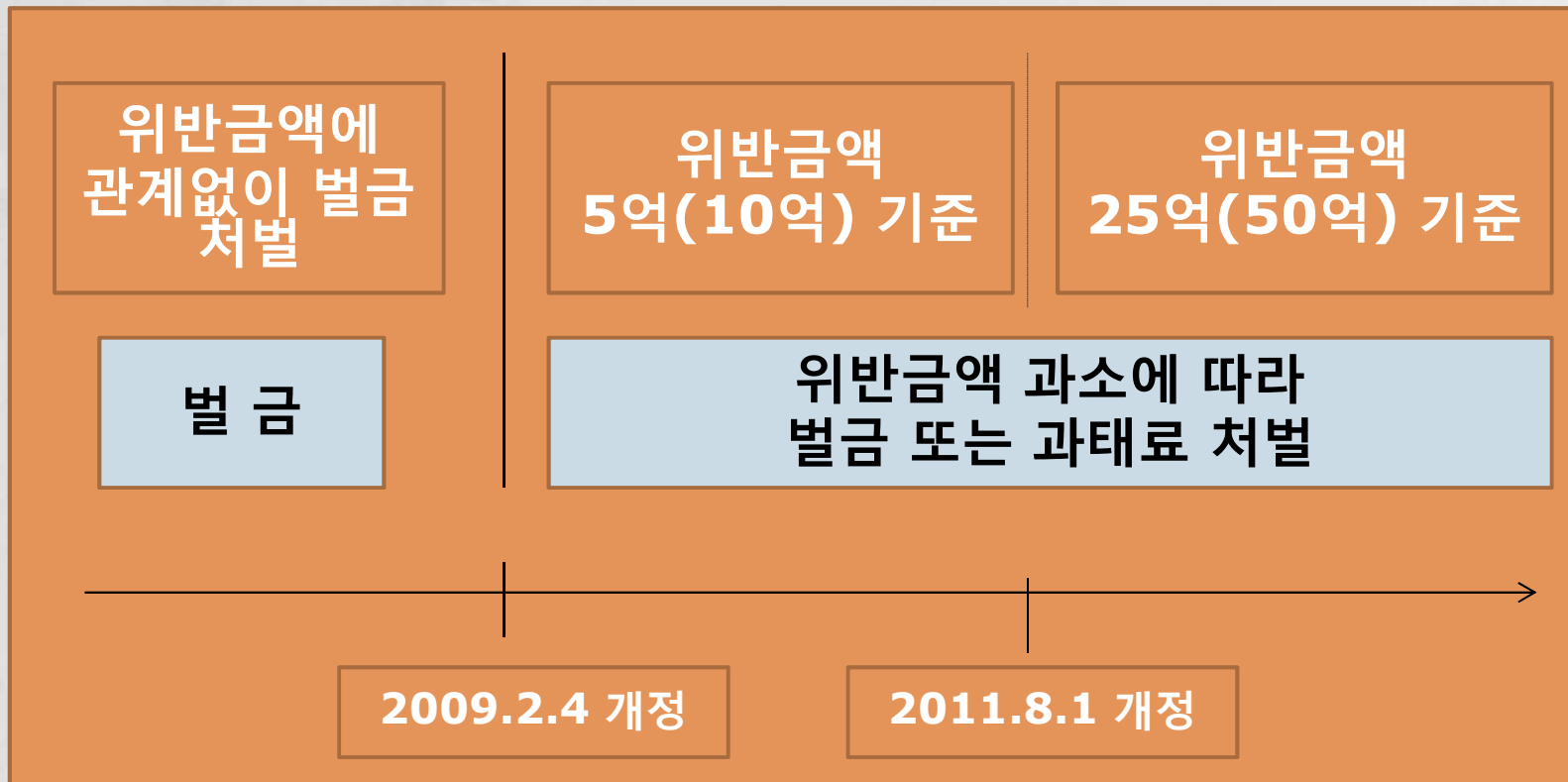
✓ 과태료 부과내용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절차 위반○ 위반금액 건당 25억원 이하의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위반○ 위반금액 건당 50억원 이하의 자본 거래 신고 위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고를 받은 자가 다시 경고사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자료제출요구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시○ 검사 거부·방해·기피한 자 등

- ✓ 과태료 부과 기관 : 관세청(세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 동일 위반행위라도 위반금액이나 회수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적용
- ✓ 의견진술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 ✓ 법인등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등에 부과
- ✓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재판절차 진행

2. 과태료 (법 제32조)

금액별, 기간별 구분에 따른 과태료와 벌금의 처벌



3. 벌칙(법 제27조~제31조)

✓ 벌칙 내용

○ 허가등 위반(제27조) /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

- 3년 이하의 징역
- 3억원 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신고등 위반(제29조)/지급방법 · 자본거래 · 휴대수출입신고 위반 등

- 1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또는 목적물 가액의 3배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 몰수·추징 : 위반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 등

✓ 양벌 규정 : 법인 등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위반시 법인 등도 처벌

✓ 미수범 처벌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위반(제17조)은 미수범도 처벌

감사합니다.

